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8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0000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4. 18.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게 한 2016년도 2분기 취득세등 74,060,000원 중 22,218,00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7.경 계룡시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610,0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74,0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18.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8

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개정 전의 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경매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상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구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 규정하면서 위 원시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그밖에 원시취득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찾을 수 없다.

2) 따라서 구 지방세법에 있어서의 '원시취득'은 일응 강학상 개념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통상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대한 차이는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8

않다는 것이다.

3)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 반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해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강제적인 매각절차이기는 하나, 그 본질은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어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며, 이는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경매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8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동희

판사 정문식

판사 함현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8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끝.